

## 우리 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긴급 건의문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핵심문화기반시설로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 도서관 전문단체와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들은 정부에 대하여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문화국가로, 충실히 지식과 정보능력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따라서 도서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청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과 아울러, 정부 모든 관계당국이 도서관 발전과 육성진흥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견의하는 바입니다.

###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새로운 21세기는 지식기반 확충과 정보화가 국가 발전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1999년 국정지표로 <지식기반의 확충>을 그 하나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국가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지난해 전국 도서관대회시(‘98.9.24) 대통령께서 주신 축하 메시지를 통하여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에는 반드시 국민의 정신적 성숙과 문화적 창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국력의 바탕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창의력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바로 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도서관의 수준이 곧 국력을 좌우한다는 막중한 인식을 가지고 맑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신 것에 큰 힘을 얻고 우리 나라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도서관은 그 주요기능이 공부방 또는 독서실이 아니라 최초의 도서관인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서부터 오늘날 첨단 디지털도서관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불변하는 고유기능은 지식과 정보를 찾고 이를 분류·정리·보존·관리하며 교환하는 등 지식·정보·자료의 산실인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국민 각자의 지식수준의 향상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 지식정보 기반체계의 중심에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정책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 디지털정보혁명의 시대에 멀티미디어 전자도서관의 출현으로 지식정보혁명은 그 출발과 완성이 도서관에서 시작하여 도서관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국민 다중의 이용에 봉사하는 지식과 정보의 공공서비스 기관이자 국민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하는 핵심 문화기반시설로서 다른 공공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교육기능은 국민 다중에게 봉사하는 공공문화시설에 부수되는 기능이며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국민 모두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반대하지 않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 도서관의 목적이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조)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2조제4호) 도서관의 다양한 부수기능 중의 하나로서 평생교육을 진흥 발전시키는 것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당국의 “도서관 없애기”는 반개혁적 처사

그러나 최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사각지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反개혁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그 기능을 혼동하여 도서관의 주된 기능은 뒷전으로 밀치고 부수적 기능만을 강조할 뿐 아니라 도서관 명칭을 바꾸어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것 등은 세계적으로도 명칭과 기능이 통일되어 있는 기준의 도서관을 없애는 처사로서, 시대착오적이며 실로 세계 도서관의 역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경제위기와 정부조직 구조개편,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청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도서관 중 4관(마포, 종교, 고덕, 영등포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이 조례안은 1998년 1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1999년 7월부터 공공도서관 4관이 평생학습관

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교육청에서 일부 소속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이 두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서관 명칭 변경과 기능개편이 도서관 발전과 지식정보시대의 흐름에 역행함을 인식하고 모두 해당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안 제13조제4항에서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동 법문은 고유의 공공도서관의 법적 지위 및 명칭·기능을 가지면서 부가적으로 평생교육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이 자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평생교육 당국자는 “이를 활용도록 한 것”이라는 표현만으로 모호하게 언급하였고(1999.1.13. YTN보도), 서울시교육청 관계 일부 공무원들은 이 조항을 도서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해 버리는 근거로 내세우는 등 법문의 해석과 취지를 왜곡함은 물론 도서관 육성 발전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관계 공무원들의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는 교육행정당국의 도서관 인식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일부 교육행정공무원들이 공직윤리와 개혁의 정신을 망각한 채 자기 법그릇 쟁기기에 굽굽하여 구조조정의 취지와 2차 정부조직 개편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불순한 영역 확장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도서관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행정당국이 이번에는 또 다른 얼굴로 도서관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달라고 하고 있어 이들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은 출판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근간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성과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중에서도 출판산업은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며 출판산업에 미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여도는 무엇보다도 크므로 양자간의 균형적인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도서관의 부가적인 기능만을 중시하는 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과행 운영 시 도서관의 발전은 고사하고 출판산업계까지도 퇴행되고 몰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출판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청소년관 공공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지는 않고,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자기영역 확장에만 급급하여 도서관을 평생 학습관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사태는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이 몰락하게 되고 평생학습관만 존재하게 되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국가 지식정보기반의 무너지고 나아가서는 출판문화산업계가 도산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체계가 붕괴되어 3류 국가로의 전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도서관은 21세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때에도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 공공도서관에 비치해 두고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벌판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학생들이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학교도서관 충실회'를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이 이 시대에 도서관과 독서 등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처럼 공부방을 벗어나지 못한 도서관들이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열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정말 도서관이 도서관답다면 우리는 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야말로 21세기를 열어 가는 가장 홀륭한 수단이자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확고한 신념을 정부의 모든 정책당국에서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이제 우리 나라도 도서관 발전에 노력해야

한국의 도서관체계를 대표하는 전문단체와 문헌정보학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국민의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지식혁명시대에 걸맞은 정보체계 구축과 국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공공도서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여 지식국가 건설과 평생교육 체계 정비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도서관계는 「국민의 정부」가 이러한 반개혁적 시도를 행한 정부로서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 도서관 발전을 통한 제2의 건국 의지를 적극 천명하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및 사서직 전문인력 축소 조치 등 반개혁적 결정을 철회토록 하여 주십시오. 이미 4개관의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도록 한 의회의 결정이 부당한 조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확실히 대비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진정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는 참다운 국민의 정부임을 만천하에 알려 주십시오.

2. 부실한 도서관은 국가의 지식기반을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지식기반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식산업의 확실한 육성 차원에서 열악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3. 곧 2차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한국 도서관계는 도서관이야말로 한 시대와 국가사회 문화를 집적하는 핵심 정보문화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가 2차 정부조직 개편시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문화 진흥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서관 살리기”를 통하여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국민의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9년 2월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두영	한국대학문현정보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한상완
한국문현정보학회	회장 이용남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정영미
서지학회	회장 배현숙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회장 최정태

##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른 정책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교육행정당국의 “도서관 없애기”를 막아 주십시오 –

우리 나라 도서관계 대표 일동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지난 1997년 말,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정당으로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인 집단에게 커다란 희망과 부푼 기대를 안겨주면서 개혁의 견인차로 지난 집권 1년을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마땅히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여러 분야의 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21세기에 대비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중 하나인 공공도서관 정책을 귀 당에서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할 사태 발생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우리 도서관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전달하는 바입니다.

###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새로운 21세기는 지식기반 확충과 정보화가 국가 발전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1999년 국정지표로 <지식기반의 확충>을 그 하나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국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그 주요기능이 공부방 또는 독서실이 아니라 최초의 도서관인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서부터 오늘날 첨단 디지털도서관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불변하는 고유기능은 지식과 정보를 찾고 이를 분류·정리·보존·관리하며 교환하는 등 지식·정보·자료의 산실인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국민 각자의 지식수준의 향상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 지식정보 기반체계의 중심에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정책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 디지털정보혁명의 시대에 멀티미디어 전자도서관의 출현으로 지식정보혁명은 그 출발과 완성이 도서관에서 시작하여 도서관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국민 다중의 이용에 봉사하는 지식과 정보의 공공서비스 기관이자 국민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하는 핵심 문화기반시설로서 다른 공공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교육기능은 국민 다중에게 봉사하는 공공문화시설에 부수되는 기능이며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국민 모두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반대하지 않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 도서관의 목적이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조)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2조제4호) 도서관의 다양한 부수기능 중의 하나로써 평생교육을 진흥 발전시키는 것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서관 없애기”는 반개혁적 행위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새정치국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제2 건국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反개혁적 일들이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청 직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도서관중 4관(마포, 중계, 고덕, 영등포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이 조례안은 1998년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99년 7월부터는 공공도서관 4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이외에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교육청들도 일부 소관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인천·울산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이에 대해 도서관 발전과 시대적 추세에 역행함을 인식, 이를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평생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문화기반 시설들의 자리를 탐하는 일부 교육행정공무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참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약화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아래 지식국가, 문화국가 건설에 필수적이며 이미 오래 전부터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없애려는 저의를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던 사회의 구석구석을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현 개혁과 구조조정의 근본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분야에서는 이와 다르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당국의 구성원들이 거꾸로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도서관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 없애기"에 동조한 서울특별시의회

이 과정에서 귀 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도서관정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 나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정부와 귀 당의 문화역량과 개혁의지를 믿고 따르던 우리 도서관계와 국민 모두를 실망케 하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교육청의 저의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도서관계의 주장은 무시한 채 교육청의 의도대로 "도서관 없애기"에 찬동한 것은 「국민의 정부」와 귀 당의 위상을 크게 손상케 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도서관 활성화는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공약

지난 1997년 12월 대선 막바지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입장장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답변서에 의하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도서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지방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생활권과 결합한 시·군·구단위로 정보도서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당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책을 지키고 빌려주는 업무가 아니라 문화도서관, 정보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다. 우리들은 그 답변서를 보고 이제야 비로소 문화와 지식정보의 참다운 가치를 아는 대통령후보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여당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발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기대와 바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의회가 도서관 명칭 변경 및 도서관 기능을 변질·악화시킨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새정치국민회의가 스스로 한 공약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간과함으로써 귀 당 역시 공약(公約)을 쉽게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여느 정당과 다르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국의 도서관인 모두는 이러한 현실에 당혹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집권여당,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도서관 발전 정책을 충실히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는 통과시킨 관련 조례를 즉각 철회하여 도서관을 다시금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하며, 차제에 부족한 서울의 공공도서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바른 길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 당과 서울특별시의회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지식과 정보의 또 다른 IMF 체제”를 초래하여 우리 나라를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귀 당의 현명한 판단과 해결을 기대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시키고 교육행정당국의 “도서관 없애기”를 중지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확실하게 대비하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9년 2월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두영	한국대학문현정보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한상완
한국문현정보학회	회장 이용남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정영미
서지학회	회장 배현숙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회장 최정태

수신 교육부장관

제목 우리 나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긴급 건의 및 면담 양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지적자유권,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현법상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세계 각국의 도서관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기본법에 이러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또한 최근 들어서는 책임 있고 전문적인 양질의 도서관 봉사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적지 않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이유로 이미 평생교육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없애고, 대신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기관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곁으로는 평생교육 진흥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립의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에서도 규정한 대로 평생교육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평생교육 기관들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도서관 기능을 평생교육진흥이라는 이유로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4.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귀 부에서 현재 일부 지방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없애기 시도를 중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맞아 귀 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진흥과 '새 학교문화 창조'는 결국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 있을 때만 그 실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편의만을 이유로 국가와 교육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귀 부에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지방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 더욱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귀 부에서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평생교육법안)의 내용 일부(제13조 4항)가 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체제의 중심기관인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일의 법적 근거로 왜곡 이용되고 있는 바, 우리 협회는 귀 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조항인 제13조 4항을 자진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 아울러 저희들이 다음과 같이 장관님을 직접 찾아뵙고,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현안에 대하여 설명,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 방문예정자 :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장 이두영 (중앙대학교 교수) / 한국대학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장 한상완 (연세대학교 교수) / 한국문헌정보학회장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조원호 등 수행인 포함 총 5명 이내
  - 나. 면담소요시간 : 20분 이내      다. 방문희망일자 : 가능하면 2월 넷째 주 내
  - 라. 저희에게 알려주실 때 이용하실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137-702) 전화 : 02-535-4868 / 팩시밀리 02-535-5616 / 담당자 : 이용훈 (기획부장)
7. 다시 한 번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제목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내용 수정 건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지적자유권,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세계 각국의 도서관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기본법에 이러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최근 들어서는 책임 있고 전문적인 양질의 도서관 봉사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제출하여 귀 위원회에 부의되어 있는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의 내용 일부(제13조 4항)가 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평생교육 체계의 중심기관인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일의 법적 근거로 왜곡 이용되고 있는 바, 우리 협회는 귀 위원회에서 동법안 처리시 악용의 소지가 있는 문제조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5. 이 건과 관련한 우리 협회의 건의서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입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사회교육개정법률안 제13조 4항 내용 수정 건의서 1부. 끝.

####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제13조 4항 내용 수정 건의서

##### 1. 건의사항

- 정부(교육부)가 제출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의 제13조 4항이 그 본래의 취지와는 반하게 국가의 문화정책의 일환인 공공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의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 위 조항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함.

##### 2. 수정 필요성

-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제13조는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 평생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평생학습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음.
  - 그러나 최근 교육부 정책당국자, 지방교육청 관계자 등은 제13조 4항을 들어 마치 공공도서관을 없애고 이를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는 근거로 거론하고 있어, 법률의 기본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1998년 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관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중 일부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음. (21개 도서관 중 4관 폐지) 이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반대에 직면하자 그러한 공공도서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마치 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본 법률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였음.
    - 교육부 평생교육 당국자는 1999년 1월 1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공공도서관)를 활용토록 한 것"이라는 표현만으로 모호하게 언급하였고 서울시교육청 관계 일부 공무원들은 이 조항을 도서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해 버리는 근거로 내세우는 등 법문의 해석과 취지를 왜곡함은 물론 도서관 육성 발전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음.
    - 또한 본 법문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행동은 본 법률안 작성을 위한 부처협의과정에서 상식과 선의로 협의에 응한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도서관박물관과)의 도서관 발전 시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협의라는 합리적 절차와 부처간 신뢰를 무시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과를 낳았음.
  - 동 법문은 고유의 공공도서관의 법적 지위 및 명칭·기능을 가지면서 부가적으로 평생교육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는 뜻으로 해석됨이 지극히 당연함. 그러나 그 조항이 오히려 평생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개연성이 높후한 바 문제가 된 조항의 삭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문(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제13조 4항) 중 *「 컨트라다 」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嘶遮 내용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
    - (예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

(의사 13130-526)

21세기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의 수명연장과 문화의 질적 향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대상자의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은 국제화 시대의 무한경쟁체제하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계몽을 촉진하고 개인의 지적 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있었던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교양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장의 역할, 최첨단의 정보와 자료를 신속히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관리에 유용한 기능수행에 이르기까지 종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도서관장은, 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직관리·직원에 대한 리더쉽·재정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정보화 기술 등에 관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영자로서의 자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환경변화를 사전에 예견하여 주변환경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제반문제에 유용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정치·행정가로서의 자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혁신과 정보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가진 일반화된 전문가로서의 자질, 또한 위와 같은 제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과 지식 등이 필요한 종합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법의 본질은 평등과 형평성을 그르치며 시대적 상황을 고려치 않아 기관발전을 저해시킬 소지가 많고, 또한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인 경험·지식과 능력이 요구됨에도 특정 직령인 사서직으로 관장직을 한정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자가 관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는 법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같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998. 12. 2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서울특별시의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한국도서관협의 의견

### 1.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의회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공립공공도서관의 장을 사서직으로 보임토록 한 법 제24조 1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 도서관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 합니다.
- 문화관광부는 이 법령의 기본 취지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사서직이 그 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2. 법 개정 불가 사유

- 서울특별시의회의 이러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임.
  - 법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전문가가 그 관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행정현실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법에 규정하게 된 것임.
  - 법 제24조 1항이 1997년 1월 1일부터 행정적으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최근까지도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도서관관장으로 보임하고 있었음. 이는 명백히 위법한 것임에도 오히려 현행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 차원의 입법과정에서 현행법을 문제삼아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한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며 월권행위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이 법안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반대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만을 반영한 건의문 채택은 현명한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1997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동일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 결의문을 서울특별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의회는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건의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서 공공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민들을 위한 좋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보다는 그 동안의 공공도서관 운영 부실의 책임이 마치 법 제24조 1항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법 개정 건의문을 철회하고 오히려 서울특별시립도서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재정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
  
- 21세기 공공도서관 관장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사서로 보임하는 것이 마땅함.
  - 21세기는 전문적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 따라서 전문적인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또한 마땅히 전문직이 운영을 맡아야 할 것임.
  - 건의문에서 언급한 미래의 도서관장 자질 (경영자로서의 자질, 정치 행정가로서의 자질, 일반화된 전문가로서의 자질, 종합관리자로서의 자질)은 오직 일반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한 자질만을 언급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은 이 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미인드 등도 또한 중요함.
  - 사서직들은 사서자격증 취득 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과 우리 협회 및 기타 관련 전문학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꾸준한 재교육과 자기학습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와 운영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행정직 공무원처럼 일시적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전문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전문사서들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맡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서직을 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마치 사서직은 종합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행정직공무원들의 편견에 찬 평가일 뿐으로, 전문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을 전문사서로 관장을 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행정직 중심의 행정 현실에서 소수 전문직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의문은 교육청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편견과 물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바, 법 개정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 3. 공공도서관 없애기와 기능전환 제한 필요성

- 현재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소관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이 더욱 부족하게 되어 국민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있음.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공립의 공공도서관의 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인 일부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예 도서관을 없애고 새로운 기관으로 바꾸는 일을 시도하고 있음.
  - 1998년 강원도(춘천시립중앙도서관 →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서울특별시(도서관 → 평생학습관 / 4개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폐관되었음.
  -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제도 등에서도 도서관 없애기를 시도하였으나 각각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

- 서울특별시에서 도서관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개정된 이후 각 지방교육청 등에서 이를 따라 소관 도서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이렇듯 도서관 폐지를 수수방관할 경우, 국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체계는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음.
-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지식기반 확충, 문화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도서관 활성화가 필요한 바, 현재와 같은 도서관 없애기를 방지하여야는 안 될 것임. 이를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도서관을 임의로 없대는 것을 제한하여야 함.
- 조례로 공공도서관을 쉽게 없앨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도서관 발전은 요원함. 따라서 정부 도서관 정책의 기본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을 임의로 없애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개정시안(제21조 4항 신설)
-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 · 육성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등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 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 · 육성하여야 한다.
  - ④ 도서관의 명칭과 기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관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신 : 행정자치부장관

제목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검토 철회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우리 협회는 귀 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이하 지침)에서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란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등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법정(法定) 조직체를 말하는 것으로, 21세기 지식사회, 정보사회의 필수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공공도서관 사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그 수가 모자랄 뿐 아니라, 아직도 충실향 서비스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문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한 좋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심과 육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4. 공공도서관은 공공성만이 강하고 수익성은 전혀 없는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수익성을 추구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정보이용권리를 심하게 해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정부는 도서관 발전이야말로 국력의 신장이라는 인식으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도서관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공도서관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도서관 부실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한 도서관 민간위탁 검토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처사로써, 국가와 자치 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귀 부의 지침(11쪽)에서도 밝힌 바 있는 민간위탁을 지양해야 할 사무에 속하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사무이기 때문에 귀 부의 지침에서 도서관을 그 대상업무에서 제외하는 명백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침(4쪽)에서 민간위탁사무 유관단체 등의 입지약화에 따른 반발을 민간위탁 부진이유의 하나로 거론하면서, 마치 우리 협회가 그러한 유관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경악과 곤혹을 금치 못합니다.
6. 우리 협회는 설립주체나 운영형태 및 관종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것과 우리 협회의 이른바 "입지"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협회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지, 결코 협회의 "입지약화"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 부에서 우리 협회를 민간위탁 부진의 한 예로 지목한 경위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협회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도서관 민간위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기관의 성격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맡아 운영할 공익 민간단체가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그 타당성이 없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를 거론하는 것은 과연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진정한 행정쇄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 부의 지침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공공도서관의 형편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기 지침에서 이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8.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 협회의 요청에 대한 귀 부의 명백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신 : 한국도서관협회장

제목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검토 철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99. 2. 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우리부의 겸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3.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서비스 수준 저하를 야기시킬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민간위탁 추진지침의 예시사항에서 공공성이 높은 도서관 등은 전문기관인 비영리사회단체(도서관협회 등)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으로 분류 제시(지침 12쪽)하고 있으며,
  4. 전문성을 지닌 공익기관이 운영한다면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이 반드시 도서관의 퇴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민간위탁의 부진 이유 중 유관단체의 반대에 관한 예시사항으로 도서관협회, 문화예술단체 등을 든 것은 결코 한국도서관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의도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협회의 의견은 앞으로 민간위탁업무에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끝.